

수산자원 보존과 관련한 수산물무역 조기자유화의 문제점*

김 민 종**

Problems on the Conservation of Fisheries Resources Raised by an Early Trade Liberalization of the Fisheries Sector in Korea

Kim, Mean-Jhong

목 차

1. 머리말
2. 내외 환경변화와 우리나라 수산업
3.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현황
4. APEC 수산물무역 조기자유화의 문제점
5. 맷음말

I. 머 리 말

APEC은 지난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주적 활동의 장으로서 설립되었으며, 특히 지난 1994년 11월 채택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에 관한 보고르 선언(Bogor Declaration)」은 역내 국가간 활발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여 APEC을 세계 유수의 경제협력체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였다.¹⁾ 이후 「보고르 선언」의 이념은 APEC의 구체적이고도 당면한 과제로 급부상하였고,²⁾ 그 결과 1997년 11월 캐나다 벤쿠버 정상회의에서는 이 선언의 이행완료 목표시기보다 훨씬 앞당겨 특정 분야의 자유화를 완료하자는

* 이 글은 2001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수산물무역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특별기고」 논문임.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근부회장, 본학회 부회장

1) APEC의 정체에 큰 획을 그었던 것으로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시 채택되어 무역·투자 자유화의 목표연도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으로 확정하였으며, 회원국간 동반자 관계를 통한 교역그룹을 지향하면서, 특히 타 지역협정과는 달리 자유화에 따라 역내국에 제공되는 특혜적 대우를 역외국에도 제공한다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한 것이다.

2) 1995년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시 보고르 선언의 행동지침을 마련하였고, 1996년 필리핀 마닐라 정상회담에서는 그 목표연도를 앞당겨 구체적 시행일정을 1997년으로 결정했다.

소위 분야별 자발적 조기자유화(EVSL ;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교섭을 개시한 바 있다.³⁾

그러나, 지난 GATT·UR 합의에 의거 이미 상당한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이라는 조치가 적용되었던 수산물이 APEC 조기자유화의 우선추진 9개 품목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전 수산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⁴⁾ 또한, WTO의 농업분야 교섭이 개시되기 전에 농산물과 같은 1차산품인 수산물을 논의한다는 것은 다소 이론 감이 있었으며, 이는 APEC이 개별 국가 또는 제품별 특성을 간과한 채 시장 개방이라는 당시 최대 이슈로만 치달았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APEC의 미래와 번영 및 보고르 선언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역내국가간 협력증진과 공동노력, 각국의 사회적 상황과 경제발전의 측면을 조화시킨 신축성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회원국간의 충분한 합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측면에 입각하여 먼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 및 무역현황을 개관하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APEC의 조기무역자유화가 수산자원 및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 내외 환경변화와 우리나라 수산업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아 위기에 처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취약한 수산물 유통·가공기반과 유통정보화 인프라는 부가가치 창출기회를 제약하고 있고, 생산성이 저조한 노후 어선, 어구 및 어법은 수산업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원양어업 분야의 예를 들어보면,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에 따른 어장축소, 조업규제 강화 및 까다로운 입어조건 요구, 출어경비 급상승과 자금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타 조업경쟁국에 비하여 고금리의 운영자금, 연근해 및 원양 할 것 없이 선원 확보난은 심각한 상황이며, 아울러 1997년 7월 1일 이후 수산물 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경영상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⁵⁾

4) 1994년 UR 타결로 우리나라는 수산물 338개 품목 중 144개에 대하여 양허(43%)를 함으로써 평균 관세율은 종전 24%에서 18%로 인하되었다.

5) 2000년 말 현재 전세계 151개 연안국 중 123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여 동 수역에서의 조업을 제한 또는 규제하고 있으며, 한 일 어업협정으로 명태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던 북해도 어장의 완전상실, 자원자국화 정책에 따른 북태평양 러시아 수역 퀘터 감소와 아울러 남태평양 연안국 및 러시아, 오만, 뉴질랜드 등에서 조업하는 270여 척의 참치, 트롤, 저연승어선들은 자동위치발신기(VMS) 장착, 옵서버 승선 및 각종 조업 활동보고를 강요받고 있다. 또한, 일본, 대만의 경우 출어 경비 전체가 1-3%의 장기저리로 지원되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5-6%로서 상대적으로 고율체제이다. 입장료는 참치어선의 경우 1990년 9백만불에서 2000년 약 14백만불로 척수가 29%(315척→223척)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6% 상승했다. 원양어선의 내국인 선원 승선률은 1990년에 100%(21,984명)였으나, 1995년 79%(8,298명), 2000년 51%(5,403명)로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수산자원 보존과 관련한 수산물무역 조기자유화의 문제점

한편, 국제적으로는 1994년에 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지구 전체 해양 면적의 36% 이상에 달하는 수역이 연안국의 EEZ에 편입되었고,⁶⁾ 1995년 「경제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 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1982년 UN 해양법협약 조항 이행협정(일명 UNIA ;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⁷⁾ 1995년 FAO의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및 금년의 「불법, 미보고, 미규제 어업방지 행동계획 (일명 IUU ;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⁸⁾ 채택 등 공동의 어업자원 관리개념 강화와 함께 공해어업자유의 시대는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또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일명 ICCAT ;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일명 CCSBT ;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일명 CCAMLR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와 작년 및 최근 각각 채택된 「중서부 태평양 고도 회유성 어족자원 보존관리협약(일명 MHLC ; Multilateral High Level Conference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남동대서양수산위원회(일명 SEAFO ; South 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등 지역수산기구들도 자원보존의 효율성 보장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조업에 대한 감시·통제·감독(MCS ; Monitoring, Controlling and Surveillance) 제도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⁹⁾ 여기에다가 1995년 WTO 출범과 OECD, APEC 등을 통한 민족간, 국가간, 지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었고, 글로벌 경제통합이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개방 확대와 조기무역 자유화 및 정부 보조금 축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⁰⁾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국가들의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산업별로는 완전 개방되어 있고, 둘째로 인력, 자본,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의 국가간 이동이 급진적으로 자유화되고 있다. 특히 WTO 규약에 따라 경쟁규범 규칙(Norms and Rules of Competition)이 획일화/표준화 되고 있

6) 崔宗和, 「現代國際海洋法」, 世宗出版社, 2000, p. 104.

7) 이 협정은 30개국 비준하면 발효된다. 2001년 6월 현재 29개국이 비준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8) 각각의 행동규범 및 행동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이행을 원칙으로 하나 각국 및 지역수산관리 기구의 정책 수립시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강제 적이라 할 수 있다.

9) 여기에는 자동위치발신기(VMS) 장착, 음서버 승선, 선박등록제도, 해상 및 항구에서의 승선 검색, 어획통계문서 제도, 양류 및 전재 규정 등과 보존관리조치의 위반시 집행절차 등이 포함된다.

10) 1997년 OECD 수산위원회에서는 어선감척이 수산자원 회복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1999년 회의에서 주요국의 정부재정 이전현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산보조금이 자원에 유해하다는 잠정결론을 발표하자 미국, 뉴질랜드, 호주를 중심으로 보조금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어서 국경이라는 존재가 경제장벽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글로벌시장, 지역시장, 국가시장 등에서 공정하고 공격적인 경쟁(Fair and Aggressive Competition)이라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도 2010년을 전후하여 비관세 장벽은 물론 무관세화로 전면 개방되는 도전과 기회, 그리고 적응과 대응이라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무역질서 재편의 와중에서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2000년 4월 워싱턴의 IMF, IBRD 봄철회의, 6월 독일의 하노버 엑스포, 2000년 8월의 IMF, IBRD 제55차 연차총회와 9월 프라하 회의 및 10월 서울에서 열렸던 ASEM 회의 기간 중 각국의 NGO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를 반대하는 의침이 있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주장은 세계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과 수산자원을 포함하여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파괴를 야기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로 세계경제가 후퇴되고 1977년 미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123개의 주요 자원 보유국들이 200해리 EEZ를 선 포함으로써 원양어업 부문에서는 어장상실과 막대한 입어료 저불 등이 경영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UN 해양법협약 제61조와 제62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생물자원의 보존이라는 목표달성을 협력하도록 하는 단서는 있으나 연안국이 EEZ에서의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능력을 결정하게 되 허용어획량의 잉여분에 대하여는 타국의 입어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주요 자원보유국들은 어장접근에는 인색한 반면 입장접근에만 치우친 정책으로 일관하여 웃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유용한 임여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개발을 막는 경우이고,¹¹⁾ 또 다른 하나는 배타적 권리라는 이유로 자국의 EEZ 내의 자원을 자국민에게만 이용토록 하여 어획강도를 과도하게 높인 결과 EEZ 제도 실시 이전보다 오히려 자원보존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UN 해양법협약 전문에 명시된 해양자원의 형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장접근과 입장접근 간에는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장의 자유로운 접근에만 편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근해 부문에서도 1999년 한-일어업협정 및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주변국 어장에 있어서도 자원보존을 위한 지역적인 조업 질서 체계가 확립되었는데, 이 결과로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에 1,540여척의 연근해 어선을 감축하였으며, 금년에 만도 670여척을 감축하여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¹²⁾

11) 그러나, 잉여자원에 대한 타국의 입어는 전적으로 연안국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고, UN 해양법협약은 외국 어선의 입어를 금지하는 연안국의 권한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안국의 독단적인 입어 거부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북아 수산협력에 관한 연구」, 2000, pp. 63-64).

12)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2001.

3.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현황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량 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15억 5백만 불, 수입은 14억 1천 1백만불로 각각 우리나라 전체교역량의 약 1% 수준에 해당하며, 수산식품 기호도의 증가, 광우병, 구제역 파동 등의 수요급증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 폭이 역사상 가장 적은 9천 4백만불에 불과했다. 수출의 경우, 주 수출대상국인 일본의 엔화 약세와 수출단가 하락, 동남아 경기 침체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대비 약 1% 감소되었으며 감소 품목은 명란 81%, 삼치 31%, 미역 12% 등이고, 증가 품목은 오징어 35%, 굴 16%, 바지락 15%, 김 22%이다.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일본이 75%로서 단연 압도적이며, 그 뒤는 6%를 기록한 중국이 따르고 있다.¹³⁾

우리나라의 최근 수산물 교역환경은 대내적으로는 연안국의 200해리 EEZ 선포로 인한 어장 축소, 연근해 자원감소 및 장기연작에 의한 양식생산량 감소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수출용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대외적으로는 EU를 중심으로 한 수출대상국의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HACCP ; Hazards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도입 등으로 수입규제 강화와 수입할당제 시행 등 비관세 장벽이 높아 감으로써 그동안 무역흑자 산업이었던 수산물 교역전망은 어두운 것이 현실이다.¹⁴⁾

한편, 수입의 경우, 대중성 어종, 고급 횟감용 활어에 대한 국민수요 증가 및 수입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20%가 증가했으며, 증가 품목은 신선·냉장·명태 145%, 활동 87%, 냉동 흉어 68%, 냉동새우 60%, 활동어 55% 순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5%로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러시아 17%, 미국 11%, 일본 9% 순이고, 상위 5개 수입품목

〈표 1〉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단위 : 백만불) 자료

구 분	수출(점유율)	수입(점유율)	무역수지
계	1,505(100)	1,411(100)	94
일 본	1,125(75)	185(13)	940
미 국	79(5)	145(10)	△ 66
중 국	84(6)	487(35)	△403
러 시 아	5(0.3)	125(9)	△120
태 국	23(2)	68(5)	△ 45
대 만	18(1)	31(2)	△ 13
기 타	171(11.7)	370(26)	△199

해양수산부, 「2000년도 수산물 수출입 동향」.

13) 해양수산부, "2001 수산물 수출진흥대책회의 자료", 2001. 3.

14) 일본은 통산성 고시 제170호(1996. 4. 30)에 의거 방어, 고등어, 전갱이, 점어리, 대구, 꿩치, 가리비, 대구, 전멸치의 9개 어폐류에 대하여 한국산과 그 외의 인도산 등 10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수입금액 쿼터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산에 대해서는 1983년 이후 현재까지 연간 40백만 달러 이상의 쿼터 중액을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박명섭, "주요국의 수산물 수입관리제도", 1999).

으로는 냉동조기 10%, 명란 8%, 냉동아귀 4.2%, 냉동갈치 3.1%, 냉동 명태연육 3% 등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APEC 역내에서의 우리나라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은 전체 15억 5백만불 중 약 14억 1천 7백만불로서 94%에 달하며, 수입의 경우도 전체 14억 1천 1백만불 중 약 12억 6천 2백만불로서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은 거의가 APEC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⁵⁾

4. APEC 수산물 조기무역자유화의 문제점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산업 환경은 어장축소, 선원노동력 격차과 더불어 지역적, 소지역적 경제 Block들의 위생검사 등의 비판세장벽 강화로 수출여건이 날로 나빠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현 수산물 무역제도 하에서 무역 자유화에 따른 국내 어가 하락이 영세적 어업구조를 가진 수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¹⁶⁾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1997년 캐나다 벤쿠버 정상회의시 조기자유화 대상 우선 추진 품목에 수산물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이를 조기자유화 9개 품목에 대해 2005년 말까지 무관세화 하자는 것은 수산업계로서는 커다란 우려가 아닐 수 없었다. 조기자유화 세부이행계획 협상은 그 다음해인 1998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시 의미있는 다수(Critical Mass)의 불참으로 결렬되어 차기 WTO 뉴라운드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종료되었으나, 당시 한국정부에서도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화 대상 총 320개 품목 중 수치상으로는 15%에 불과하나 수입액은 1997년 기준 총 10억 3천 6백만불 중 5억 4천 9백만불로서 약 53%를 차지하는 48개 민감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 또는 이행 유보하여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¹⁷⁾ 이는 자유화 대상 품목 관련 업종의 종사자 수, 지역특화 산업, 수입이 100만불 이상인 동시에 생산자 잉여감소액이 큰 품목들을 기준으로 선정한 결과였으며, 여기에서는 이에 덧붙여 APEC의 조기무역자유화 추진시 중요한 문제점 및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수산물 무역자유화 논의시 우리가 종종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수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유

15) 해양수산부, "2000년도 수산물 수출입 동향", 2001. 2.

16)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제도 중 관세분야는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본관세 및 단순구조체계, 종 가세 중심, 탄력관세제도의 소극적 사용이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비관세분야도 보조금 정책이 어민의 소득지지를 위한 영어자금과 연근해 어업과 가격안정을 위한 운영자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WTO 뉴라운드 협상시 선진국의 보조금 축소 및 삭감 요구를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산물 위생 및 검역제도는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출수산물 중심의 검사체계라는 성격이 강하여 현재의 자금을 감소 상황과 맞물려 WTO 뉴라운드 협상 결과 추가적으로 관세인하가 예상되는 다양한 저가, 저질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 검역이 어렵게 되어 있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에 요구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기술장벽 제도의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주문배, 박수진, 「WTO 뉴라운드 대응 수산물 무역제도의 개선방향」, 1999).

17) 우리나라는 5개 품목(오징어, 명태, 갈치, 민어, 조기)은 조기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43개 품목은 이행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의 각각 70%와 40%를 차지하던 일본과 중국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수산자원 보존과 관련한 수산물무역 조기자유화의 문제점

한성을 지닌 천연자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고갈위기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수산자원을 언제든지 재생가능한 상품으로 오해하여 수입국의 관세·비관세 조치 등 “시장접근” 개선이라는 관점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산물은 먼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은 후 적정한 관리와 건전한 이용, 나아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¹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새삼스레 대부분의 수산자원이 과도하게 개발되었거나 이미 고갈상태에 있다는 FAO의 보고서를 인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수산물 교역 자유화 논의에 있어서 수산자원 및 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고유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FAO 차원의 보다 많은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두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화는 첫째,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수산자원이 직면하고 있는 자원남획을 조장하여 각국의 영세하고, 선량한 어민들의 조업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무역자유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자원의 실태와 그에 따른 보존·개발가능성 및 이에 부합하는 무역 규범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개별 어족자원의 풍도에 따라 신중히 접근되어야 하는데, 즉 증가추세에 있는 자원에 대한 관세는 인하하되, 감소추세인 자원에 대해서는 이를 삼가함으로써 자원의 최적이용을 감안한 교역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또한, 수산물에 있어서 추가 무역자유화 문제와 잉여자원의 최적이용 문제는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자국의 소비에 비하여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는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하여 입어를 허용해 줌으로써 교역문제와 자원의 최적이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다소 다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으나, 이러한 의미에서 인공어초를 통한 자원 조성 등 지속적 이용에 공헌하거나 자원을 크게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도서·어촌지역에서 취업기회 효과가 매우 큰 긍정적 수산보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실, 수산자원에 유해한 것은 보조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어선건조 지원, 첨단기술에 의한 어선의 어획강도 강화, 중고어선의 해외수출, 수산물 수입자유화의 급속한 확대 등에 기인한다.²⁰⁾

둘째, 모든 나라에 일률적인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화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개도국의 경우 대부분 생계

18) 일본은 이에 대해 현재 세계의 수산자원은 과잉어획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세계생산량의 약 40%가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원보존관리조치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일본 수산타임즈, “일본의 WTO 교섭제안”, 인터넷 자료, 1999. 6).

19) 한편, FAO의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1995. 10. 31. 채택) 제11조 2.2에는 “International trade in fish and fishery products should not compromis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and responsible utilization of living aquatic resources”라고 명시함으로써 수산물의 국제교역이 수산업의 지속적 개발 및 생물자원의 책임있는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1999년 WTO 시애틀 각료회의시 우리나라 및 일본 등 6개국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교섭의 기본원칙으로 할 것과 수산물의 시장접근상 관세 비관세 관련 공산품과의 동일취급은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고, 아울러 수산보조금에 대하여 규제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일부선진국들이 수산업 보조금을 과잉어획, 무역왜곡,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저해 및 환경에 유해하다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데 대하여 수산업의 식량안보에의 기여측면을 들어 지속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지형 어업으로 영위되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국의 민감품목을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 또는 장기간에 걸쳐 인하하여 궁극적으로 무역자유화가 개도국의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²¹⁾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은 상호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 무역 규범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수산물 생산어민의 잉여감소가 우려된다. 물론 수산물의 무역이 조기자유화 되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자유화·개방화로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된다라는 장점은 있으나 수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국가일수록 수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자유화 대상품목 생산어민의 잉여감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즉,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는 대신 생산자 잉여가 감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 국내·외 어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수산물의 무역자유화는 생산자에게 더욱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²²⁾

한편, 1997년 분야별 자발적 조기자유화 우선 추진품목 논의시에 우리나라 원양어업 부문에서는 명태, 꽁치, 홍어, 민어 등과 오징어, 가다랑어 통조림 등 6개군 12개 어종을 관세자유화 유예요청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 당시 조기무역 자유화로 인한 예상 피해액은 약 2조원에 달했으며, 선원 6,700명에 대한 일자리 상실이라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5. 맷 음 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95개국의 정부대표들은 지난 1995년 일본에서 교포선언을 채택하여 "수산업의 인류 식량안보에의 기여 (Sustainable Contribution of Fisheries to Human Food Security)"를 천명함으로써 수산업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개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수산업은 식량안보에의 기여 외에도 각국의 지역사회 발전과 연안역의 관리 및 환경보전에 공헌함은 물론, 각국의 국민에게 여가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에 근거한 무역 규범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한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동참하여 왔으며,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관리방침을 논의하고 아울러 조업규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책임있는 어업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따라서 일률적인 관세인화 또는 무관

21) 이와 관련 FAO의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의 제11조 1. 5는 "States should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economic and social role of the post-harvest fisheries sector when formulating national polic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fishery resources." 라고 명시함으로써 수산물 교역이 각국의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2) 주문배 외,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대응전략", 1999.

수산자원 보존과 관련한 수산물무역 조기자유화의 문제점

세화 논의는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은 물론 어민의 조업기회 박탈 및 수산업 영위 자체를 곤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수산물 수출 한계 노출로 이어져, 과연 APEC이 추구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유발한다. 또한, 수산물무역의 조기자유화로 인한 생산어민의 잉여감소 및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커다란 문제점으로 드러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APEC의 수산물무역의 조기자유화는 WTO 뉴라운드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종료되었으나, 1999년 시애틀 WTO 각료회의가 의제결정에 대한 각국의 의견 대립으로 결렬됨으로써 일단은 수산분야의 조기자유화 논의가 수면 하에 잠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로 선언에 담겨져 있는 자유화 논의가 이제는 범 세계적 추세가 되었음을 감안할 때 수산업의 특성 및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를 충분히 감안한 사전 대응전략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 APEC의 무역 조기자유화 논의시 자발적 참여의 원칙과 회원국간 특성을 고려한 신축성 부여에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APEC 또는 WTO 뉴라운드에서의 수산물무역 조기 무역자유화 논의시 수산자원의 유한성과 수산업의 인류 식량안보에의 기여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들이 결정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역내 경제협력의 밝은 미래를 추구하는 APEC의 정신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수, 장영수, 김창완 “수산분야 조기자유화로 인한 우리나라 원양어업 파급효과 분석 : 관세철폐 효과를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통권 제57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0. 6.
- 박명섭, “주요국(미, 일, EU 등)의 수산물 수입 관리제도”, WTO 뉴라운드 대응 수산부문 심포지움 자료, 1999. 11.
- 주문배 외,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대응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
- 주문배, 박수진, “WTO 뉴라운드 대응 수산물 무역제도의 개선방향”, WTO 뉴라운드 대응 수산부문 심포지움 자료, 1999. 11.
-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세종출판사, 2000.
- 일본 수산타임즈, “일본의 WTO 교섭제안”, 인터넷 자료, 1999. 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북아 수산협력에 관한 연구」, 2000. 7.
- 해양수산부, “2001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2001. 2.
- , “2000년도 수산물 수출입 동향”, 2001. 2.
- , “2001 수산물 수출전통 대책회의 자료”, 2001. 3.
-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2001.
-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995.10.
- ,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01.